

촉탁변호사 운영지침

법무지원단 법무송무부

제정 2011.10.04. 지침 제132호

개정 2012.07.27. 지침 제148호

개정 2019.04.29. 지침 제269호

개정 2020.02.24. 지침 제297호

개정 2021.05.14. 지침 제333호

개정 2022.10.12. 지침 제375호

개정 2023.02.13. 지침 제391호

개정 2023.04.04. 지침 제395호

개정 2023.06.22. 지침 제400호

개정 2023.12.18. 지침 제412호

(상임이사·지원·지원장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계약사무처리지침 등 26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지침)

개정 2024.01.25. 지침 제41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직제규정」 제20조에 따른 비정규직 중 촉탁변호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27.>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촉탁변호사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기타 다른 제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5.14.>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5.14., 2024.01.25.>

1. “관리부서”라 함은 「직제규정」에 따라 법규·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부가 속한 실을 말한다.
2. “관리부서장”이라 함은 관리부서를 지휘·감독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제4조(업무) ① 촉탁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의 자문·대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
 3. 법률자문 및 질의에 대한 검토·회신
 4. 계약서·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
 5. 심사평가원 임직원 법규교육 지원
 6. 그 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② 촉탁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위촉 등

제5조(위촉) ①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촉탁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촉탁변호사가 제10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④ 원장은 촉탁변호사 중 근무기간 및 업무수행태도 등을 고려하여 선임촉탁변호사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촉탁변호사에게는 제14조에서 정한 보수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07.27., 2024.01.25.>

제6조(채용방법) ① 촉탁변호사의 신규채용은 제한경쟁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1.05.14., 2022.10.12.>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경쟁채용은 채용인원,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인사규정」 제4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원장이 결정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0.12.>

③ 제한경쟁채용 시 채용직위, 계약기간 및 응시자격 등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재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제7조(자격기준) 촉탁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0.12.>

1. 「변호사법」 제4조 각호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 단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자
2.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촉탁변호사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12.07.27.>

1. 「인사규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이 지침에 따른 채용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로서 계약을 해지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채용계약) ① 촉탁변호사를 채용할 때에는 원장이 별지 제3호서식의 촉탁계약서에 의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복무(근로시간·휴게·휴일)·보수(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휴가에 관한 사항
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

② 촉탁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가, 1부는 촉탁변호사가 보관한다.

[전부개정 2019.04.29., 2021.05.14.]

제10조(해촉) ① 촉탁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촉탁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1. 촉탁변호사가 채용계약 해지의사를 서면(사직원)으로 제출한 경우
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 부적격(60점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4. 「인사규정」 제65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될 경우

5. 그 밖에 해촉사유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해지의사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07.27., 2021.05.14., 2024.01.25.>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촉탁변호사를 해촉할 때에는 해촉일 30일 전까지 촉탁변호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

제11조(복무) ① 촉탁변호사는 원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근무하되, 근무시간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중 복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촉탁변호사의 복무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가) ① 촉탁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수행 태도, 업무수행 능력, 소송 및 자문건수 등 업무수행 실적, 복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촉탁변호사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1차 평정자는 「직제규정」에 따라 법규·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의 장으로 하고, 2차 평정자는 관리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04.29., 2021.05.14.>

② 근무성적 평가는 8월말과 2월말을 기준으로 9월초와 3월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평정일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2.07.27.>

제13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근무성적 평가결과는 계약의 변경·연장, 보수의 조정 및 해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 평가결과는 동기부여 등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에 한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05.14.>

제4장 보수

제14조(보수) ① 촉탁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연봉으로 하되, 보수는 기본연봉, 가족수당, 성과급으로 한다. <개정 2019.04.29.>

② 촉탁변호사의 기본연봉은 매 년 별표1에 따라 산정하고, 매 년 정부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되, 입사 후 재직 기간에 따라 별표2에 따른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별표2에 따른 가산금액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심사평가원에 종사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9.4.29.>, <개정 2021.05.14., 2022.10.12.>

③ 제1항에 따른 기본연봉은 12개월로 나누어 지급(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한다. <개정 2021.05.14.>

④ 개인성과급은 직전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등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등급 및 차등지급률 등 개인성과급의 차등지급에 관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직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07.27.>

⑤ 보수의 지급일은 「보수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4.29.>, <개정 2021.05.14.>

제15조(여비 등) ① 촉탁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여비지급세칙」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05.14.>

② 촉탁변호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퇴직금) 촉탁변호사의 퇴직금은 「보수규정」 중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신분보장) 촉탁변호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비밀의 유지) 촉탁변호사는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기간 종료 이후라도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05.14.>

제19조(겸직금지) 촉탁변호사는 위촉기간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01.25.>

제20조(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심사평가원은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종사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라 한다)는 「변호사법」 제4조제3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그 밖에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채용·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04.04.]

제21조(기타사항) ① 촉탁변호사는 위촉기간 종료 후 3년간 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처리하되,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의 제규정을 준용하여 원장이 정한다.

부 칙 <지침 제132호, 2011. 10.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은 201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후 제12조에 따라 최초로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날(해당년도에 촉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날)의 전날까지를 평가한다.

부 칙 <지침 제148호, 2012. 7. 27.>

이 지침은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침 제269호, 2019. 4.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 입사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2019년 3월 보수분부터 재산정하여 지급한다.

부 칙 <지침 제297호, 2020. 2. 24.>

이 지침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침 제333호, 2021. 5.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2항 및 별표1,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25일 보수분부터 재산정하여 지급한다.

부 칙 <지침 제375호, 2022. 10.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2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25일 보수분부터 재산정하여 지급한다.

부 칙 <지침 제391호, 2023. 2.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지침 제395호, 2023. 4. 4.>

이 지침은 202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침 제400호, 2023. 6. 22.>

이 지침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침 제412호, 2023. 12. 18.>

(상임이사·지원·지원장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계약사무처리지침 등 26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지침)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지침 제419호, 2024. 1.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개정지침은 2024
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수행 실적

소송수행 실적

(평정기간 : . . . ~ . . .)

구 분	건 수			결 과	
	총계	심사소송	현지조사소송	승소(율)	패소(율)
변호사A					
변호사B					
변호사C					
변호사D					
변호사E					

[별지 제2호서식] 교육 및 자문 실적

교육 및 자문 실적

(평정기간 : . . . ~ . . .)

구 분	교육실적		자문실적	
	건 수	비 고	건 수	비 고
변호사A				
변호사B				
변호사C				
변호사D				
변호사E				

※ 비고란에는 교육 및 자문만족도 조사결과 등 참고사항을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9.4.29.> <개정 2020.2.24. 2021.5.14., 2023.6.22., 2023.12.18.>

촉탁 계약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촉탁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계약의 성립) “갑”은 “을”을 상근 촉탁변호사로 위촉하고, “을”은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승낙함으로써 본 계약은 성립한다.

제2조(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 ① “을”의 근무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및 **본부**이고, “갑”의 「촉탁변호사 운영지침」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갑”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을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은 후 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갑”은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3조(보수 등)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기본연봉, 가족수당, 성과급으로 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연봉은 원으로 하되, 12개월로 나누어 지급(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한다.

③ 가족수당은 「보수규정」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성과급은 성과급 지급목적의 예산 범위 안에서 전년도 해당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가. **경평성과급**: 기준월봉에 기관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 및

내부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

나. 내부평가급: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5조를 적용하여 지급

※ 기준월봉 : 기본월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⑤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연봉의 상세내역은 별표와 같다.
- ⑥ “갑”은 제1항에 따른 기본연봉, 가족수당, 성과급을 “을”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시기는 “갑”의 「보수규정」 제6조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⑦ 제2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등에 관하여는 “갑”의 「여비지급세칙」을 따른다.
- ⑧ “갑”은 제2조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을”에게 그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근무 등) ① “을”은 “갑”이 지정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근무시간·휴게 시간·휴일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갑”의 「인사규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갑”은 업무 수행을 위한 “을”의 자료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비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을”의 휴가는 “갑”의 「인사규정」 제4장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제5조(비밀의 유지) “을”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기간 종료 이후라도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계약해지) ① “갑”과 “을”은 상호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갑”은 “을”이 제2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체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일은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
- ④ “갑”은 계약기간 중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 중 계약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
 2. “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을”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4. “을”이 “갑”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5.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을”이 3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6. 기타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⑤ “을”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 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도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을”은 계약기간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갑”의 허락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8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9조(계약기간 만료 시 법률관계) ① 계약 당사자 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촉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새로이 촉탁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갑”은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수를 가지급하고 “을”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를 가지급한 후 새로이 촉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보수를 정산한다.

제10조(이해상반 행위 금지) “을”은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갑”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을”의 계약기간 내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당해 소송의 상소심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보조참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처리하되,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갑”의 제규정을 준용하여 원장이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인)

“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지 제4호서식] 촉탁변호사 근무성적 평정표

촉탁변호사 근무성적 평정표

1.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위 촉 일		평 정 기 간	
2. 평가사항							
요소	항목	평 가 내 용	배 점	평 정			평균점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총점	
업무수행 태도 (40)	근면 성실성	매사에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자기업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는 어떠한가?	10				
	적 극 성	맡은 바 업무를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는 어느 정도인가?	10				
	협 조 성	조직전체의 이익을 항상 생각하고 상사 및 동료직원과의 협조관계는 원활한가?	10				
	교양 및 품성	기본적인 교양과 분별력을 갖추고 품행이 방정하며 인간관계는 원만한가?	10				
업무수행 능력 및 실적 (40)	업무지식 및 기능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능을 구비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정도는 어떠한가?	10				
	업무의 질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확성과 진실성은 어떠한가? 신뢰성이 있도록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10				
	소송수행 실적	※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 건수 및 승소율 참고하여 평가	10				
	교육 및 자문실적	※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및 자문실적을 참고하여 평가	10				
복무상황 (20)	출근상황	결근, 지각, 조퇴 등 복무상태는 양호한가?	20				
※ 항목별로 점수를 기재하여 평정하고, 확인자는 평정자 및 확인자의 총점과 평균점을 산출 기재 하되 소숫점 1자리까지 기재함.			총 점				

3. 종합의견

1 차 평 정 자	2 차 평 정 자

4. 평정자 서명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5. 판정기준(평균점수로 판정)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적격
90-100	81-89	70-79	60-69	60점미만

6. 기 타

가. 피평정자 대상별 평정자

평 정 자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관리부서 부장	부서장

나. 종합의견란 기재

- 평정자(1차 및 2차)는 피평정자의 근태평가 평정에 대한 종합의견을 기재함

다. 평정요령

- 평정은 피평정자 개인별로 평정하되, 절대평정함

[별표1] <신설 2019.4.29.> <개정 2020.2.24., 2021.5.14., 2022.10.12., 2023.2.13., 2024.1.25.>

(단위: 천원)

연차*	연봉*
1	66,145
2	67,392
3	68,652
4	69,983
5	71,333
6	72,699
7	74,082
8	75,501
9	76,955
10	78,389
11	79,806
12	81,225
13	82,624
14	83,955
15	85,269
16	86,565
17	87,777
18	88,970
19	90,148
20	91,287
21	92,411
22	93,483
23	94,538
24	95,558
25	96,560
26	97,548
27	98,482
28	99,414
29	100,347
30	101,280

- *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변호사 경력을 고려하여 연차 및 연봉 산정
- 경력 연수의 계산단위는 개월로 하며, 1개월 미만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함
- 잔여 월이 있을 경우 연차 간 차액을 월할 계산하여 연봉에 반영

[별표2] <신설 2021.5.14.>

재직기간에 따른 가산 금액(제14조제2항 관련)

재직 기간	가산 금액
3년차 이상	월 20만원
5년차 이상	월 50만원
7년차 이상	월 80만원
10년차 이상	월 100만원